

대법원 2023. 1. 12 선고 2022다27707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3. 1. 12 선고 2022다277072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22. 8. 10 선고 2021나2514 판결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0. 13 선고 2021가소6042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A

피고, 피상고인 B

판결선고 2023. 1. 12.

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. 8. 10. 선고 2021나2514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이흥구, 주 심 대법관 안철상, 대법관 노정희, 대법관 오석준